

중고차 소비자의 권리

중고차 구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가장 큰 일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자는 이 중고차 소비자의 권리를 게시해야 하고, 소비자가 구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그 사본 1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권리는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DCWP) 웹사이트 nyc.gov/dcwp에서 번역본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성사시킨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서명하시기 전에 시간을 충분히 갖고 받으신 소비자의 권리를 숙지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권리

1 소비자는 광고된 가격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자는 자동차에 가격 표시를 해 놓아야 합니다. 중고차 판매업자는 광고된 가격이나 견적이나 자동차에 표시되었던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자동차를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중고차 대리점에서는 소비자가 해당 대리점에서 자동차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차 가격을 올릴 수 없습니다.

2 소비자는 무엇에든 서명을 하기 전에 대출 계약서의 세부사항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3 소비자는 중고차 판매업자는 주선하는 대출이나 융자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다른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비자는 대출 계약서의 중요한 약관에 대해 서면 공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방법에서는 소비자가 연이율(APR), 대출하기로 합의한 금액, 대출 계약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해 납부해야 할 총액 등과 같은 약관의 서면 공개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법에 따라, 자동차 대리점은 같은 조건, 납입 횟수, 담보, 다운 페이먼트(보증금)로 대출을 받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최저 APR을 공개해야 합니다. 자동차 대리점은 또한 판매업자가 대출에 대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개는 DCWP가 해당 언어로 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성사시킨 언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소비자는 모든 중고차에 대해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 FTC) 구매자 가이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당되는 경우, 뉴욕주 레몬법(New York State Lemon Law) 서면 보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구매자 가이드는 자동차와 보증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각 자동차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뉴욕주 레몬법에 따라, 중고차 판매업자는 주 용도가 개인용이나 가정용이며 가격이 \$1,500 이상이고 마일리지가 100,000 마일 미만인 중고차에 대해 서면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보증은 엔진, 트랜스미션, 구동축, 브레이크, 레디에이터, 스티어링, 얼터네이터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절대 "현재 상태 그대로" 구입하지 마세요.

구입하시기 전에 구매자 가이드와 보증을 신중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 소비자는 추가 항목(애드 온)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동차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제시된 가격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추가 항목을 구입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소비자는 각 추가 항목의 가격을 서면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동차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각 추가 항목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항목별 가격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각 제품 및/또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 대출의 월 납부금과 총 대출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8 소비자는 최소 옵션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취소 옵션을 제공해야 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는 영업일 기준 2일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소비자가 자동차 대리점을 벗어나 계약과 모든 대출 계약에 대해 검토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소비자는 자동차를 집으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자동차를 트레이드인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취소 기간 동안 트레이드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 취소 옵션은 소비자가 계약을 성사시킨 언어로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nyc.gov/dcwp에서 계약 취소 옵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9 소비자는 크레딧을 신청할 때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민족, 성별, 결혼 상태, 나이, 또는 정부생활보조 이용 등을 근거로 크레딧을 차별하는 것은 연방법상 불법입니다.

[계속 >](#)

10

소비자는 불만사항을 접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중고차 판매업자에 대한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자는 사업을 운영하려면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DCWP) 라이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311번으로 전화하셔서 DCWP를 바꿔달라고 하신 후, 자동차 대리점의 라이센스 상태와 불만사항** 이력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자가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했거나 여러분을 이용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nyc.gov/dcwp에서, 또는 전화 311(뉴욕시 이외 지역에서는 212-NEW-YORK)번으로 연락하셔서 불만사항을 접수하세요.

소비자 이니셜 또는 서명
